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을 “임상건축사” 로 변경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5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084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 (안 제13조제4항)	2

I.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084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5. 2. 25.

다. 회 부 일 : 2025. 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
(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u>역량 있는 건축사</u>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u>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건축</u> <u>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u> <u>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u>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 <u>입상 건축사</u> ”라 한다)----- ----- ----- <u>입상 건축사</u> -----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① 최근 10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②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③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²⁾에게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에서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데,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 용어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2. (생략)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를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적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격 요건과 해당 명칭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 역시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의 취지와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5